

2

한국 영재교육의 체계와 변화

I. 도입하기 영재성은 여러 영역에서 여러 수준으로 발현된다.

인간 재능의 발달 영역이 다양한 것처럼, 동일 영역에서의 영재성도 그 심화의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재성은 단일 수준이 아니라, 다층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가네 교수가 영재의 출현율을 상위 10%로 상정하였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 판별된 영재들이 단일 수준의 잠재력과 성취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또래집단의 학습자들 가운데 상위 10% 수준의 재능을 나타낸 학습자들을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상위 10% 수준의 영재학습자 집단에서도 개인간의 재능에 있어 뚜렷한 개인차를 목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집단에서 또 한번의 상위 10% 수준의 영재들을 판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화 하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수준의 영재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준1의 영재성을 지닌 학습자로 판별된 경우에는,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서 뚜렷한 영재성을 발현했다고 단정 짓기 이전에 그러한 영재성이 엿보이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재성의 수준을 개념적으로 구분해 놓고 보면,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수준1 정도의 영재들은 영재학급에서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수준2의 영재들은 영재교육원, 수준3의 영재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 독립된 학교에서 심화와 숙진 프로그램의 학습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수준4 이상의 영재성을 발현하는 고도영재 학습자들은 튜터링이나 멘토링 등의 사사교육 프로그

램을 포함하여 철저히 개인 맞춤형의 영재교육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림 2-1> 영재성의 수준

○ 이와 같이 영재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수준으로 발현되는 만큼 영재의 개인 특성에 최적화된 차별적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 서비스 체계를 운영해야 하겠지요.

II. 준비하기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학습목표>

1. 영재성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영재교육 정책과 법률내용의 주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황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영재성의 수준에 적합한 영재교육 서비스 체계
2. 우리나라 영재교육 운영 체계
3.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4.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황과 변천 내용

III. 학습하기 영재교육 관련 법, 현황 및 변천

1.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법률적 근거와 영재교육진흥법

○ 한 국가의 영재교육은 법률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헌법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상위 법률에서 영재교육의 연구와 실천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교육 정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반 학교 교육의 연장 형태나 별도 유형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고유한 개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법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는 학생의 능력과 성취에 적합한 교육을 추진하되, 특히 영역별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을 별도로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13조(취학의무)에서 취학의무 면제와 취학 후 조기진급을 허용하고 있고,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영재나 재능아의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우수한 학생의 속진교육(acceleration) 프로그램을 명시한 것이어서 초·중등교육법상에도 영재교육의 기본원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 국가 교육과정의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보면, 「2015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 부진 학생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수준에서도 지원해야 하며, 단위 학교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 요약하자면,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그리고 「2015 국가 교육과정」은 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탁월해 보이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록 영재 혹은 영재교육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의 가치와 당위성 및 실천 방안 등은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업은 일반 정규 교육에서도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학습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4(생략)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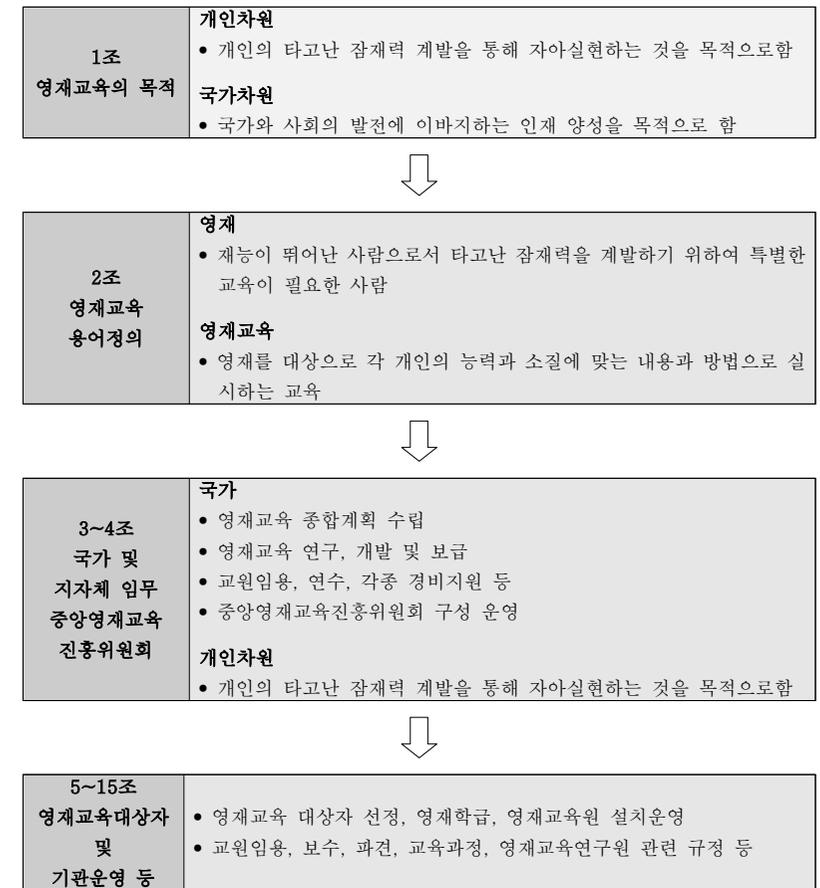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2> 우리 나라 영재교육 관련 법률 조항 주요 내용

- **이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영재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체제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영재교육 영역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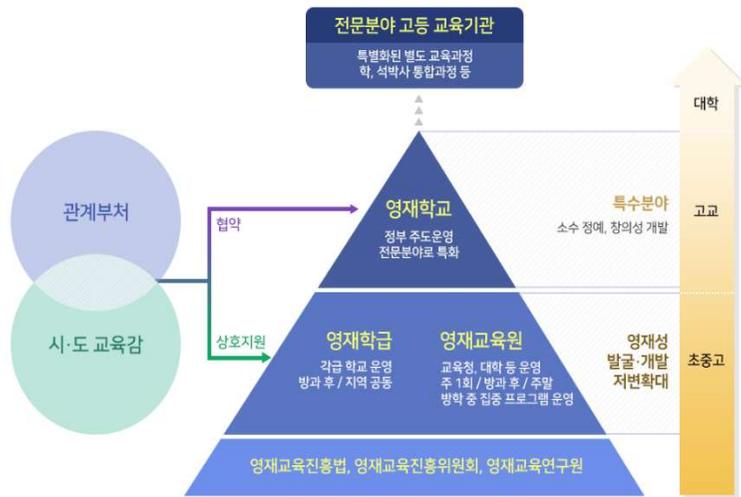
- <그림 2-3>에서 보듯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제1조에 영재교육의 목적을 개인차원과 국가차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영재교육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3-4조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정해 두고 있으며, 5-15조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교육기관의 운영 등 영재교육 실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림 2-3> 영재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2.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운영 체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영재교육원-영재학급의 체계로 운영되며,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영재교육연구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 2-4>와 같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영재성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영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심화학습 교육 기관이라고 한다면, 영재학교는 과학이나 예술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심화와 속진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수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 2-4> 우리나라 영재교육 운영 체제도

출처: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홈페이지

3.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황

○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전국 초중등학생의 약 0.25% 정도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2010년에 이르러 1%를 상회하였으며, 2021년 현재 약

1.49%의 학생이 영재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 약 1.81% 정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의 숫자가 증가하였다가 최근 그 비율이 감소해 왔습니다.

○ 한편, <표 2-1>의 기본 현황을 보면, 영재교육기관의 숫자도 초창기 약 400개 기관에서 2015년 2,500여개의 교육기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21년 현재에는 1,704개 영재교육기관으로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 대상자와 영재교육기관의 수가 줄어들면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숫자도 2015년 약 25,000여명에서 2021년 현재 20,137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 2-1> 영재교육 기본 현황 통계

연도	전국 초중등 학생 수	영재교육 대상자 수	영재교육기관 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2021	5,323,075	79,048(1.49%)	1,704	20,137
2015	6,088,827	110,053(1.81%)	2,538	25,214
2010	7,262,715	92,198(1.27%)	1,840	19,729
2005	7,757,900	31,100(0.4%)	488	-
2003	7,875,698	19,974(0.25%)	400	-

○ <표 2-2>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 영재학교 등의 순서로 영재교육 대상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규모에 비해 교육청 지원 영재교육원의 학생 수가 약 3배에 가까울 만큼 정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심화 학습과정으로서의 영재학급 및 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2>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영재교육대상자 현황

연도	영재학교·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계
		교육청	대학부설		
2021	6,834 (8.7%)	31,102 (39.4%)	11,346 (14.4%)	29,766 (37.7%)	79,048 (100.0%)
2015	6,023 (5.5%)	32,681 (29.7%)	9,821 (8.9%)	61,528 (55.9%)	110,053 (100.0%)

2012	4,905 (4.1%)	33,383 (28.2%)	8,97 (17.6%)	71,118 (60.1%)	118,377 (100.0%)
------	-----------------	-------------------	-----------------	-------------------	---------------------

○ 한편, 영재교육 실시 영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2-3>에서 보듯이, 초창기부터 수학과학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음악·미술·체육 영역의 서비스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정보과학이나 인문사회, 그리고 융합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이 영역에 참여하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수·과학 영역이나 수학 혹은 과학 등의 학구적 교과영역의 교육 대상자는 크게 줄었으며, 반면에 인문사회나 발명을 포함한 여타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의 교육 영역을 수·과학 이외의 영역으로 다양화하거나 융합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표 2-3> 영재교육 영역별 운영 현황(학생수/비율)

연도	수학	과학	수·과학	정보과학	인문사회	외국어	발명	음악	미술	체육	융합	기타	계
2021	9,279 (11.7%)	11,781 (14.9%)	30,849 (39.0%)	4,618 (5.8%)	2,775 (3.5%)	1,394 (1.8%)	3,829 (4.8%)	1,728 (2.2%)	1,573 (2.0%)	501 (0.6%)	9,191 (11.6%)	1,527 (1.9%)	79,048 (100.0%)
	(65.4%)			(34.6%)									
2015	15,392 (14%)	18,836 (17.1%)	55,144 (50.1%)	3,181 (2.9%)	3,883 (3.5%)	2,484 (2.3%)	4,433 (4%)	1,699 (1.5%)	1,770 (1.6%)	1,178 (1.1%)	-	2,053 (1.9%)	110,053 (100.0%)
	(81.2%)			(18.8%)									
2012	20,659 (17.5%)	18,140 (15.3%)	59,653 (50.4%)	4,248 (3.6%)	3,869 (3.3%)	3,233 (2.7%)	1,515 (1.3%)	1,948 (1.6%)	729 (0.6%)	3,268 (2.8%)	-	1,115 (0.9%)	118,377 (100.0%)
	(83.2%)			(16.8%)									

4.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변천 특징

○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영재교육은 1970년대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 제도와 조기 입학제도가 유일한 영재교육 제도였습니다. 1970년대에 일부 교육 연구 기관과 학자들이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 1980년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영재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1년 3월에는 경북 구미고등학교에 영재 학급이 설치되었습니다. 1981년에 문교부에서

영재교육 종합 수행 방안을 연구했으며, 1983년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경기과학고가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에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실이 설치되었으며, 1990년에 한국영재학회를 창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연구와 실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보고서에 영재교육 강화를 제안하였고,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에 영재교육 의무조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시범센터 운영을 거쳐, 1998년 9개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침내 2002년 4월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어 우리나라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 극대화)이 2002년 11월 27일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계획 수립을 거쳐 현재 <제4차 종합계획(2018-2022)>(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림 2-6>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교육부)

○ 문민정부(1993-1998)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보화·세계화·다원화 사회의 교육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성과 인성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으며 이때부터 영재교육은

제도권의 공교육 체제 속에서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영재교육 태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1998-2003)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려면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전국의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업(1998)을 지원하였으며, 영재교육진흥법(2000)과 동법 시행령(2002)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학교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사업을 추진해 국내 최초의 한국과학영재학교(Korea Science Academy)를 개교시켰습니다. 영재교육이 정규 공교육 체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의 영재교육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영재교육 정초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여정부(2003-2008)는 “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미래 대비 교육, 보편적 인성과 사회성이 존중되는 세계로 열린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을 기반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반영하듯이 교육에서의 평등성 가치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재능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 중 어느 하나를 택하기 보다는 양 가치의 병진(竝進)을 추구하였습니다. 과학영재학교의 양적인 증설은 억제하면서도 초·중학교 수준에서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꾸준히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양적인 증가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변천 과정에서 영재교육 확산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 속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특목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제도 도입, 영재선발에서의 교사관찰추천제 적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영재교육 기관도 4배 가까이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5개 과학영재학교를 전환하였고, 인천 송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1개씩의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영재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와 특혜 시비를 증폭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일종의 혼돈과 혼란에 빠진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박근혜 정부(2013-2017)는 부실해진 공교육을 진흥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표방하면서 자유학기제 도입과 창의적 인재 육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충하자는 사회적 요구와 보편교육을 강조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늘어나면서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영재교육 관련 행·재정적 지원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에 “영재교육 활성화”항목이 신설되었지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3.11.)>이 제정되면서, 영재교육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영재교육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행위로 오인되는가 하면, 과학영재학교 입시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2017-현재)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9-2022)을 수립하여,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발’에서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꾸준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영재교육 기관이나 영재교육 대상자 숫자가 대폭 증가해 왔으며, <교사관찰추천제>의 도입으로 영재 발굴과 판별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습니다.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을 벗어나 발명, 정보, 예술, 인문, 융합 등 다양한 영재교육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수립된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을 통해 영재교육의 비전과 목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과 교육과정, 그리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과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사회 불평등성의 심화 현상이나 사교육 과열화 등의 우려 속에서 정체 혹은 감소의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잠재력과 성취를 지닌 영재들에게 그들의 학습 요구에 최적한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 하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0). **영재교육진흥법**. 서울: 저자.
- 교육인적자원부(200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서울: 저자.
- 이덕난 (2016). 영재교육진흥법의 개정 방향과 방안: 법 형식과 법리적 측면에서. **한국영재학회 2016년 제1차 영재교육포럼 자료집**, 31-78.
- 최호성(2014). 한국영재교육 1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고슴도치와 여우의 협업을 지향하여. **영재와 영재교육**, 13(3), 5-30.
- 최호성(2016). 한국 영재교육의 위기 현상 진단과 해결 방안. **영재교육연구**, 26(3), 493-514.
- 최호성(2017).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영재성, 영재 판별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재개념화와 법 개정 방향의 시사점. **영재교육연구**, 27(3), 269~290.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GED)**. <https://ged.kedi.re.kr/index.do>